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10)

2024.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 친·인척 등 없이 무연고자로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 및 유골 봉안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시장 등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의식 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장례비용 및 봉안시설 등 장례지원이 상이하고 북한이탈주민인 무연고 사망자와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들 간 장례의식 주관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지원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장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제8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대외별칭 “남북하나재단”)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장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 ③ (생략)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8의2. (생략) <u><신설></u> 9. (생략) ⑤ ~ ⑯ (생략)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 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및 봉안 등 장례지원 에 관한 사업 9. (현행과 같음) ⑤ ~ ⑯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 친·인척 등 없이 무연

고자로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 △장제 및 납골안치, △봉안관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4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무연고 장제 및 봉안 지원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사망위로금 지원	금액	3,000	1,500	2,500	3,500	2,000	1500	500	14,500
	인원 (명)	6	3	5	7	4	3	1	29
장제, 납골안치	금액	2,800	1,200	866	—	2,000	700	500	8,066
	인원 (명)	5	2	1	—	3	1	1	13
봉안관리비	금액	500	750	250	500	750	1000	750	4,500
	인원 (세대)	2	3	1	2	3	4	3	18
총계	금액	6,300	3,450	3,616	4,000	4,750	3200	1750	27,066
	인원 (명)	13	8	7	9	10	8	5	60

자료: 통일부('24년 예산: 3,300만원/ 사망위로금 지원비: 1인 50만원/ 장제 및 납골안치 지원비: 1인 100만원 이내)

□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¹⁾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시장 등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의식 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연고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장례를 치르는 역할을 지자체에서 담당하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고독사한 무연고 사망자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재단에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장례비용 및 봉안시설 등 장례지원이 상이한 실정임.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으로서 무연고로 사망한 북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이탈주민에 대한 장례의식 및 봉안 등 장례지원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가족, 친인척이 없고 무연고자로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재 북한이탈주민재단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일환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동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동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책임은 국가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²⁾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그 업무를 북한이탈주민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단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북한이탈주민재단이 무연고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장례의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³⁾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인 무연고 사망자와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북한이탈주민재단과의 장례의식 주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조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문 의 처

02)6788-5267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에 의무화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친분관계 있는 자가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